

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입법·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대표발의 : 조규식 의원)

의안 번호	4559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3. 9.

발 의 자 : 조규식·최지연 의원

찬 성 자 : 최병순, 설재영, 신혜영, 서다운
신진미, 홍성영, 정인화, 박용준,
강정수(9인)

1. 제안이유

입법·법률고문의 임기를 정하면서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어 장기 연임에 따른 특정인의 자문 독점 및 다른 전문가의 위촉 기회 제한이 우려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연임을 한 차례로 제한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입법·법률고문에 대한 연임 제한 규정(안 제6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소관부서 : 의회사무국

라. 입법예고 : 2026. 3. 11. ~ 3. 16.(5일간)

대전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

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입법·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입법·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본문 중 “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재위촉”을 “한 차례만 연임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임기) <u>입법 · 법률고문의 임기</u>는 2년으로 하되, <u>의장이 필요하다</u>고 인정할 때에는 <u>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</u>. 다만, 법률고문의 경우 임기를 마쳐도 수행 중인 소송은 그 소송이 끝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한다.</p>	<p>제6조(임기) ----- ----- <u>한 차례만 연임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관계법령

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[시행 2025. 1. 21.]

제28조(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

법령 등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·검토하여 그 법령 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. <개정 2019. 4. 16.>

1. 법률·대통령령·총리령 및 부령
 2. 법령의 위임에 따른 훈령·예규·고시 및 공고 등 행정규칙
 3. 지방자치단체의 조례·규칙
 4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및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·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·지방공단
내부규정
- ② 제1항에 따른 부패유발요인 검토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